

중요무형문화재원형보존기록화작업 (重要無形文化財保存記錄化作業)

文化財專門委員 鄭 化 永

차 례

I. 記錄化作業의 意義	III. 原形保存記錄 第 1 次 作業
II. 原形保存 記錄化 基本計劃	1. 音盤製作
1. 現況	2. 記錄映畫
2. 問題點	3. 冊子 發刊
3. 原形保存 方案	IV. 結 論

1.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의 의의(意義)

우리나라 고유(固有)의 전통문화(傳統文化)인 기(技), 예능(藝能)의 보존(保存) 육성(育成)을 위하여 정부(政府)에서는 문화재(文化財) 보호법(保護法)에 의거(依據), 1964년도(年度)부터 겨레문화(文化)에 영향이 큰 전승기능보유자(傳承技能保有者)를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하고 있다.

1976年 현재(現在) 지정(指定)된 건수(件數)는 음악(音樂) 15종목(種目), 가면극(假面劇) 10종목(種目), 무용(舞踊) 5종목(種目) 공예(工藝) 15종목(種目), 민속(民俗)놀이 7종목(種目), 기타(其他) 조선왕조(朝鮮王朝) 궁중음식 등(宮中飲食 等) 4종목(種目)으로 총(總) 56종목(種目)이며 보유자수(保有者數)는 163명(名)에 이르고 있으며, 보유자(保有者)의 연령별(年齡別)로는 50세(歲) 이상(以上)이 144명(名), 45~49세(歲)가 19명(名)으로 나타난다.

이 가운데 특(特)히 중대(重大)한 점(點)은 당사자(當事者)인 보유자(保有者)의 연령문제(年齡問題)이다. 보유자중(保有者中)에는 70~80세(歲)의 고령자(高齡者)도 많다. 그러므로 고령자(高齡者)가 보유(保有)하고 있는 전통기(傳統技) 예능(藝能)의 전수(傳受)는 그 시한면(時限面)에서 전수완성(傳受完成)이란 용이(容易)한 문제가 아니다. 완전전수(完全傳受)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우리의 전통유산(傳統遺産)은 또 하나가 민멸(泯滅)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금반(今般) 추진(推進)되는 중요무형문화재원형보존(重要無形文化財原形保存)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은 이러한 만일(萬一)의 일실(逸失)을 대비(對備)하는데도 큰 의의(意義)가 있는 것이다.

돌이켜 보건데 과거 삼국시대(三國時代)를 비롯하여 이조초(李朝初)에 이르기까지 수(數)많은 기(技), 예능(藝能)의 종목(種目)이 문헌상(文獻上)으로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그 기록(記錄)은 너무나 단편적(短片的) 명칭(名稱)에 불과(不過)한 것이었고, 그나마 빠진 것이 많을 것이다. 형태(形態)나 기법(技法) 또는 예능(藝能)일 경우 가사설명(歌詞說明)이나 진행도록(進行圖錄), 구성 등(構成 等)의 자세(仔細)한 기록(記錄)이 없기 때문에 후세(後世)들로 하여금 그 추정(推定)마저 불능(不能)케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結果)는 보존(保存)과 전승(傳承)이라는 차원(次元)높은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 많은 전통문화(傳統文化)들은 완전(完全)한 제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지고 말았다.

유형(有形)인 문화재(文化財)같으면 발굴(發掘)이라도 가능(可能)하지만 무형(無形)의 이 유산(遺産)들은 기록화(記錄化)와 계속적인 전수(傳授) 이 두가지 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전(傳)해지고 있는 전통기(傳統技) 예능(藝能)은 오직 기록화(記錄化)와 전수교육(傳授教育)으로 후세(後世)에 물려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도 이번의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은 중차대(重且大)한 과업(課業)의 하나임에 틀림없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당국(當局)에서 전통문화(傳統文化)의 보존전승책(保存傳承策)의 하나로 1970년도부터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로 지정(指定)된 종목(種目)의 보존(保存) 및 그 전승(傳承)을 위하여 보유자(保有者)들로 하여금 전수교육(傳授教育)을 실시(實施)하고 있다. 그리하여 연간(年間) 전수실적(傳授實績)을 평가(評價)받기 위하여 전수교육평가발표회(傳授教育評價發表會)를 매년(每年) 가지고 있다. 그 밖에 전수실태상황(傳授實態狀況)을 파악(把握)하기 위하여 수시(隨時)로 관계인사(關係人士)들로 하여금 현지확인(現地確認)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수교육(傳授教育)은 다소(多少) 개선(改善)과 향상(向上)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은 문제점(問題點)을 가지고 있었다.

1. 현(現) 전수교육(傳授教育)은 대부분(大部分)이 구전심수식(口傳心授式) 교법(教法)을 사용(使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자(文字)나 보표(譜表)에 의(依)한 방법(方法)보다 구어(口語)에 치중(置重)하여 가르키고 있기 때문에 와전(訛傳)의 우려(憂慮)와 비능률적(非能率的) 교육(教育)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수(傳授)에 있어 전수내용(傳授內容)이라든지 교습지도방법(敎習指導方法)이 일정(一定)한 기준(基準)에 의(依)한 전수교과과정(傳授敎科課程)이라든지 전수교본(傳授敎本) 또는 지침서(指針書)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다시 몸소 체득(體得)한 기(技) 예능(藝能)을 구전심수(口傳心授)에 의한 옛 방법(方法)을 그대로 하고 있다. 더욱이나 전수교육(傳授教育)은 고도(高度)의 전문적(專門的) 기(技) 예능교육(藝能敎育)을 중점(重點)으로 하는 영재교육(英才敎育)이니만큼 보다 전문적(專門的)이며 능률적(能率的)이고 합리적(合理的)인 전수교육(傳授敎育)이 실천(實踐)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대(時代)와 환경조건이 달라 전수교육(傳授敎育)의 방법(方法)을 구전심수식(口傳心授式)으로는 파행적(跛行的) 교육(敎育)밖에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리부재(論理不在)의 전수방법(傳授方法)으로는 이기일치(理技一致)의 후계자(後繼者) 양성(養成)은 힘드는 것이다.

전수교육(傳授敎育)의 문제(問題)를 집약(集約)하여 보면

가. 전수(傳受)에 가장 필요(必要)한 전수교재(傳受教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나. 전수방법(傳受方法)에 있어 구전실기(口傳實技)에 편중(偏重)되어 있고
다. 교재부재(教材不在)에 따른 계획적(計劃的)이고 능률적(能率的)인 전수운영(傳受運營)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상(以上) 전수문제(傳受問題)에 대(對)해서 가장 긴급(緊要)한 교재정비(教材整備)로 인(因)한 제문제(諸問題)가 해결(解決)될 수 있다는 점(點)에서도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을 위한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은 자못 그 의의(意義)가 깊고도 크다할 것이다.

언제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할 이 역사적(歷史的) 중요문화재(重要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은 그 미치는 파급효과(波及效果)는 지대(至大)할 것이며 전통문화(傳統文化)로서의 기(技), 예능전수분야(藝能傳受分野)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文化)에 주는 앞으로의 활용도(活用度)나 그 영향이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이 기록화(記錄化)로 첫째 전통문화(傳統文化)의 일실(逸失)을 막고 영구적(永久的) 보존(保存)이 가능(可能)하며,

둘째, 전수교육(傳授教育)의 효율적(效率的)이고도 완벽(完璧)한 전승(傳承)을 기(期)할 수 있고,

셋째, 전통기(傳統技) 예능(藝能)의 저변확대(底邊擴大)에 이바지하고 새로운 문화창조(文化創造)의 터전이 될 것이다.

2. 동 기(動機)

당국(當局)에서는 상기(上記)한 바와 같이 중요전통기(重要傳統技) 예능(藝能)을 전승(傳承)시키기 위하여 전수교육(傳授教育)을 실시(實施)하고 있으나 그 실태(實態)를 보면 많은 문제점(問題點)이 있었음을 밝혀 두었다. 그리하여 완전전수(完全傳受)란 일조일석(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욱이나 고도(高度)의 기예(技藝)를 요(要)하는 전수교육(傳授教育)은 연로(年老)한 보유자(保有者)들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결실(結實)을 거둘 수 있을는지 문제이다.

지난 1964年 이후(以後) 보유자(保有者)로 지정(指定)된 기(技), 예능자중(藝能者中)에는 작고(作故)한 분만해도 15명(名)에 이르고 있다. 특(特)히 그 중(中)에는 단종목(單種目)에 단일보유자(單一保有者)도 끼어 있어 전수(傳受)에 많은 손실(損失)이 있기도 하였고 자칫하다가 민멸(泯滅)의 우려도 있었다.

또한 이 보유자(保有者)들은 대개(大概)가 실기(實技)는 완벽(完璧)에 가까운 분들이지만 과거(過去) 사회(社會)에서 성장(成長)하였기 때문에 교육수법(教育手法)이나 논리(論理)의 부재(不在) 또는 결여(缺如)로 인(因)하여 제나름대로의 교육실천(教育實踐)의 효과(效果)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 물론(勿論) 전수(傳受)를 받는 전수장학생(傳受獎學生)도 자질(資質)이 문제(問題)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전수교육(傳授教育)도 교육(教育)이니만큼 교육(教育)의 효과(效果)는 전수주체자(傳受主體者)인 보유자(保有者)의 전수방법(傳受方法)에 있는 것이다. 현재(現在) 가장 긴급(緊要)한 것 중(中)의 하나가 전수교재원본작성(傳受教材原本作成)이다. 다행(多幸)히 이번 기록보존작업(記錄保存作業)에 책자(冊子) 발간(發刊)이 될 것인바 이는 바로 이러한 교재부재(教材不在)를 해결(解決)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以上)과 같이 전수교육(傳授教育)이나 문화재(文化財) 보존전승(保存傳承)에 있어 개재(介在)되어 있는 현안(懸案)들을 하루빨리 해결(解決)하기 위하여 금반(今般) 당국(當局)에서는 막대(莫大)한 비용(費用)을 들여 이 역사적(歷史的)인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을 실천(實踐)하기에 이른 것이다.

II.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화기본계획(記錄化基本計劃)

지정중요무형문화재(指定重要無形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본계획(基本計劃)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 황(現況)

1) 지정 중요문화재

가. 종목별

구 분 분야별	지정건수	비 고
음 악	15종	종묘제례악 외 14종
연 극	10 "	봉산탈춤 외 9종
무 용	5 "	진주검무 외 4종
공 예	15 "	자전칠기장 외 14종
민 속 놀 이	7 "	강강술래 외 6종
기 타	4 "	조선왕조 궁중음식 외 3종
계	56종	

나. 보유자별

구 분 연령별	남	여	계	비 고
50 세 이 상	115	31	146명	
49 세 이 상	14	5	19 "	
계	129	36	165명	

2) 기록현황

총 지정종목 56종 중

○영화 17종 기록완료

○나머지 39종은 미착수

○영화 제작이 완료된 17종도 책자는 미제작

2. 문제점

- 1) 보유자 대부분이 고령 병약하여 활동, 불능으로 인한 원형의 촬영, 채보, 채록이 불가능함.
- 2) 기록화 미비로 중요 지정 무형 문화재가 변형되고 있음.
- 3) 기록화된 교재미비로 구전 심수식 전수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진도부진 난해, 내용전달의 불명확 등 전통예술 보전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3. 원형 보존방안

1) 목적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를 기록 보존함으로써 전통 예술의 올바른 전승 보급과 민족 문화 창조에 기여함.

2) 방침

가. 지정된 중요 무형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기록화한다.

나. 기록은 문화재 위원회의 자문과 부문별 지도 위원의 자문을 받아 기록화 한다.

다. 기록화 사업은 연차 사업으로 하되 그 활용과 보존이 합리화를 위해 가급적 부문별 일괄기록화 한다.

라. 기록화 순위는 원형 보존의 시급성과 보유자의 노쇠 등을 감안하여 음악부분, 공예부분, 연극부분, 기타부분의 순위에 의한다.

3) 세부계획

가. 시기 및 내용

1) 시기: 1976~1978(3개년간)

2) 기록화 대상: 56종(지정전종목)

내 용	총 기록 대상		기록 완료	미 착 수
	수 량	구 분		
음반 및 책자	14	음 반		15
		책 자		15
영화 및 책자	29	영 화	17	11
		책 자		28
기 타	13	책 자		13
계	56종			

3) 연도별 제작

년 도 별	음 반	영 화	책 자
1차년도 (76)	15종		15종
2차년도 (77)		3종	41종
3차년도 (78)		8종	
계	15종	11종	56종

4) 방 법

○연극, 무용, 민속놀이, 부분은 영화화하고 음악 사진 무보해설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 한다.

○음악 부분은 음반화하고 악보 등을 수록한 책자를 발간한다.

5) 제작 형식 및 수량

가) 음 반

○형식: 음악부문을, 전종목을 성악 기악 등 음악성질별로 구분 전집으로 제작(3권 1질)

○내용: 음반 및 해설 책자

○수량: 200질

나) 영 화

○형식: 무용 및 연극부문을 각 종목별로 영화화(11종)

○내용: 칼라 16미리

○수량: 각 1벌(계11벌) 평균 60분품

다) 책 자

○형식: 각 종목별 구체적 공정 및 과정을 수록

○내용: 4·6배판 단행본(56종)

○수량: 500부

나. 소요 예산 및 재원

1) 소요예산

1차년도(76): 8,000,000원

2차년도(77):40,000,000원

3차년도(78):30,000,000원

계 78,000,000원

2) 재원

1차년도(76년)국고보조 2,000,000원

2차년도(77년)국고보조 10,000,000원

문예진흥기금 3,000,000원

3차년도(78년)국고보조 10,000,000원

문예진흥기금 20,000,000원

부족액은 무형 문화재보호협회 기금에서 사용

기록 대상

가. 제작 완료분

구분 기록화내용	지정번호	명칭	비고
영 화	2	양주 별산대 놀이	책자미제작
	3	꼭두각시 놀음	
	4	갓 일	
	6	통영오광대	
	7	고성오광대	
	8	강강술래	
	12	진주검무	
	17	봉산탈춤	
	18	동래야류	
	21	승전무	
	27	승무	
	34	강령탈춤	
	39	처용무	
	40	학무	
	42	악기장	
	43	수영야류	
	47	궁시장	
계	17종		

나. 미 착수분

구 분 기록화내용	지 정 번 호	명 칭	비 고
음반 및 책자	5	판소리	
	11	농악12차	
	19	선소리 산타령	
	29	서도소리	
	41	가사	
	57	경기민요	
	30	가곡	
	51	남도 들노래	
	50	범패	
	46	대취타	
	20	대금정악	
	23	가야금산조 및 병창	
	16	거문고 산조	
	1	종묘 제례악	
	45	대금산조	
계	15종		
책 자	10	나전칠기장	
	31	나죽장	
	35	조각장	
	37	화장	
	53	채상장	
	54	끊음질	
	55	소목장	
	14	한산 모시 짜기	
	22	매듭	
	28	나주의 셋골나이	
	32	곡성의 돌실나이	
	48	단청장	
	38	조선왕조궁중음식	
계	13종		

구 분 기록과내용	지 정 번 호	명 칭	비 고
영화 및 책자	13	강릉 단오제	
	9	은산 별신제	
	15	북청 사자 놀음	
	24	안동 차전놀이	
	25	영산 쇠머리 대기	
	26	영산 줄다리기	
	33	고싸움 놀이	
	44	한장군 놀이	
	49	송파 산대놀이	
	56	종묘제례	
	58	줄타기	
	계	11종	

Ⅲ. 원형보존기록(原形保存記錄) 일차작업(一次作業)

당국(當局)에서 계획(計劃)한 원형기록(原形記錄) 3개년계획(個年計劃)을 전기(前記)하였거니와 여기서는 1차년도(次年度)에 시행(施行)되고 있는 음반제작(音盤製作)을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음반제작(音盤製作)의 대상(對象)은 현재(現在) 중요(重要)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 지정(指定)된 성악(聲樂) 기악(器樂) 농악(農樂)을 총망라(總網羅)하였다. 다른 분야(分野)도 같겠지마는 음악분야(音樂分野)의 전수(傳受)는 상당(相當)한 시간(時間)이 소요(所要)되며 곡(曲)도 난잡(難澁)한 것이어서 보유자(保有者)가 조금이라도 가창능력(歌唱能力)이 있을 때에 기록(記錄)이 가능(可能)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며, 따라서 일차사업(一次事業)으로 실시(實施)한 것이라 본다. 지금도 몇 보유자(保有者)는 고령(高齡)에 득병(得病)까지하여 전곡(全曲)을 부를 수 없는 상태(狀態)이고 보면 원형(原形)을 위한 기록화(記錄化)는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형편(形便)에 있는 전통음악(傳統音樂)은 이 쾌단(快斷)있는 기록화사업(記錄化事業)으로 크게 실효(實效)가 있는 것이다.

1. 음반제작(音盤製作)

음반제작(音盤製作)은 다음 표(表)와 같이 지난 9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총 관 표

순서	제 목	보 유 자	소 요 시 간	음반매수	특기사항	담 당
1	춘 향 가	김 소 희 김 여 란	281 ' 23 "	6	전 관	강 한 영 이 보 형
2	수 궁 가	정 광 수 박 초 월	123 ' 31 "	3	" (나이자 량약)	"
3	심 청 가	정 권 진	156 ' 43 "	4	"	"

순서	제목	보유자	소요시간	음반매수	특기사항	담당
4	홍보가	박록주	114' 25"	2½	전관	강한영 이보영
5	적벽가	박봉술 박동진 한승호	137' 3" (+23')	3½	½은 전판뒤에 추가로 붙일 것	"
6	종묘제례악	성경린 외	691' 00"	4	18곡	성경린
7	남창가곡	홍원기 전효준	104' 36"	4		장사훈
8	선소리 산타령	이장배 정득만	31' 48"	1	서도 입창도 포함	한만영
9	여창가곡	김월하	90' 00"	2	15곡	장사훈
10	대취타	최인서	14' 00"			성경린
11	가사	정경태 이양교	80' 41"	2	12곡 전곡	장사훈
12	가야금병창	박귀희	18' 00"			
13	정악대금	김성진	14' 50"	1	전판 남녀교창	성경린
14	남도들노래	설재천 조공예	31' 43"			정화영
15	가야금산조	김윤덕	43' 34"	1	전관	이보형
16	거문고산조	신쾌동	46' 00"	1		"
17	농악 12차	문백운	23' 31"	½	전관	이보형
18	대금산조	강백천	24'	½		정화영
19	서도소리	김정연 오복여	48'	1		한만영
20	범패	박송암	113' 11'	2½	측정시간은85' " "	한만영
21	경기잡가	안비취 묵계월 이은주	68' " "	1½ " "		성경린 " "
"	"	"	"	"		"

제37매

상기(上記)와 같이 제작(製作)되는 음반(音盤)은 총(總) 37매(枚)에 이르고 이 각종목별(各種目別) 음반(音盤)에 대(對)하여 간단(簡單)한 해설책자(解說冊子)가 각(各) 셋트마다 따른다. 해설책자(解說冊子)의 내용(內容)은 각(各) 곡목해설(曲目解說)과 각(各) 보유자(保有者)의 사진(寫眞) 및 약력(略歷)이 기입(記入)된다.

이 작업(作業)을 위하여 5차(次)에 이르는 지도(指導) 및 실무회(實務會)를 가졌다.

지도위원(指導委員)에는 성경린(成慶麟), 장사훈(張師勛), 강한영(強漢永) 문화재위원(文化財委員), 실무위원(實務委員)은 한만영(韓萬榮), 이보형(李輔亨), 문화재전문위원(文化財專門委員)과 필자(筆者) 이상(以上) 3인(人)이 위촉(委囑)되었고, 주무(主務)는 말할 것도 없이 문화재(文化財) 이과(二課) 무형문화재계(無形文化財係)이다.

실제(實際) 기록화(記錄化)에 앞서 기준(基準)과 작업과정(作業過程)을 마련하였다. 먼저 문제(問題)인 것은 연로(年老)한 보유자(保有者)의 전곡(全曲) 취입불능문제(吹入不能問題), 동종목(同種目) 복수(複數)에 따른 보유자(保有者)들의 곡목배정(曲目配定) 또는 시간(時間)이 문제(問題)이었으나 이러한 곡(曲)은 상호협조(相互協助)로 무난(無難)히 해소(解消)되어 본격적(本格的)인 기록화작업(記錄化作業)이 추진(推進)되었다.

10월에 원형녹음(原形錄音)이 일단(一旦) 끝나 앞으로 남은 것은 음반화(音盤化)만 남아 있는데 연말내(年末內)로 음반기록화(音盤記錄化)는 마무리되는 것이다.

2. 기록영화(記錄映畫)

第2차년도(次年度)인 1977년에는 기록영화(記錄映畫) 3종(種), 책자발간(冊子發刊) 41종(種)으로 되어 있다.

또한 第3차년도(次年度)에는 기록영화(記錄映畫)만 8종(種)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기록영화(記錄映畫)의 제작(製作)은 77~78 2년에 걸쳐 나누어 만든다.

기록영화(記錄映畫) 대상(對象)은 별표(別表)와 같이 음반분야(音盤分野)를 제외(除外)한 공예(工藝), 가면희(假面戲), 무용(舞踊), 민속(民俗)놀이 등(等)으로 대별(大別)할 수 있다.

이 중(中)에 기(既)히 기록화(記錄化)가 완료(完了)된 17종(種)을 제(除)한 11종(種)이 대상(對象)이 되어 있는 것이다.

기록영화(記錄映畫)는 제일차적(第一次的)인 직접전수(直接傳受)에 버금가는 보존방법(保存方法)이며 하나 하나의 자세(仔細)한 기교(技巧), 동작(動作) 또는 공정(工程)을 빠트리지 않고 수록보존(收錄保存)하는데 큰 몫을 지닌다. 책자(冊子)나 도보 등(圖譜等)으로 감당(勘當)하기 어려운 점(點)을 이 기록영화(記錄映畫)가 보완(補完)해 주는 것이다.

기록영화(記錄映畫)의 제작과정(製作過程)에 있어 원형(原形)의 고증(考證), 의상(衣裳), 소도구(小道具) 음악장단등(音樂長短等)의 종합적(綜合的)인 부분(部分)까지 일목(一目) 요연(瞭然)하게 나타나므로 전수교육(傳授教育)의 교재(教材)로서 또는 문화재(文化財) 저변확대(底邊擴大)와 이해(理解)를 위해서 크게 역할(役割)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記錄)의 과정(過程)에 있어 수다(數多)한 난관(難關)도 있겠지만 이 작업(作業)의 중대성(重大性)에 비추어 어떻게든지 완성(完成)되기를 바라는 바다.

3. 책자(冊子) 발간(發刊)

책자(冊子) 발간(發刊)이란 지금까지 지정(指定)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전종목(全種目)을 각기(各己) 단행본(單行本)으로 앞으로의 기록보존(記錄保存)은 물론(勿論)이고, 무엇보다도 중요(重要)한 전수교육교재(傳授教育教材)로서 항시(恒時) 활용(活用)될 것이다. 전기(前記)한 바와 같이 문화재전수(文化財傳受)의 현상(現狀)은 전수교재(傳受教材)의 미비점(未備點)으로 인(因)하여 소기(所期)의 효과(效果)를 못거두고 있는 실정(實情)이다. 이 책자(冊子)가 발간(發刊)되므로써 논리부재(論理不在)다 시피된 전수교육(傳授教育)에 새로운 방향제시(方向提示)가 될 것이고 교육운영면(教育運營面)에서 크게 개선(改善)되리라 믿는 바다.

책자(冊子)의 발간(發刊)에 있어 중점적(重點的)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事項)은 첫째 전수교재(傳受教材)로서 사용(使用)함에 편리(便利)하겠음 내용(內容)이 짜여져야 한다. 따라서 평이(平易)하고도 명료(明瞭)해야 한다.

둘째, 원형적(原形的) 기록물(記錄物)이 되기 위해서 지정(指定)을 위한 조사보고서 등(調查報告書等)을 기저(基底)로 하며 보존(保存)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되도록 도보 등(圖譜等)을 많이 수록(收錄)하고 예능(藝能)일 경우는 과장별(科場別), 공예(工藝)일 경우는 공정별(工程別) 구분(區分)을 뚜렷이 기록(記錄)되어야 한다.

이 세가지를 요약(要約)하면 이 책자(冊子)하나만 읽어보면 누구라도 충분(充分)히 이해(理解)되겠음 만들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책자(冊子)로는 개인(個人) 또는 당국(當局)에 의해서 2~3종목(種目)이 간행(刊行)되었을 뿐 전(全)혀 발간(發刊)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點)에서도 책자발간(冊子發刊)은 한 종목(種目)도 빠짐없이 발간(發刊)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오래 남을 수 있는 기록(記錄)이기 때문이다.

IV. 결 론(結論)

이번에 실천(實踐)하고 있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사업(記錄事業)은 값진 우리 전통문화재(傳統文化財)의 보존(保存) 및 전승(傳承)에 지름길이 될 것이다. 입체적(立體的)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록화(記錄化)의 민족문화(民族文化)의 중흥(中興)에 새로운 이정표(里程標)를 세우는 것이며 조상(祖上)이 물려준 문화유산(文化遺産)을 겨레 만대(萬代)에 남겨주는 과업(課業)인 것이다. 선대(先代)의 문화유산(文化遺産)없이 새로운 문화(文化)를 창조(創造)한다는 것은 초석(礎石)이 없는 사상누각(沙上樓閣)과 다른 것이 무엇있겠는가. 새로운 문화(文化)의 창조(創造)도 진흥(振興)도 모름지기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터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時點)에 볼 때 이 원형보존(原形保存) 기록화사업(記錄化事業)은 우리문화(文化)의 모태(母胎)가 될 것이며, 일면(一面)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波及效果)를 줄 것이다.

첫째, 구태의연(舊態依然)한 전수교육(傳授教育)의 혁신화(革新化)를 초래(招來)하여 전수교육(傳授教育) 본래(本來)의 이기일치교육(理技一致教育)의 구현화(具顯化)를 기(期)하고,

둘째, 전통기예능(傳統技藝能)의 체계적(體系的) 이해(理解)로 인(因)한 차원(次元)높은 전수효과(傳受效果)를 거두고,

셋째, 전수생(傳受生)으로 하여금 자기(自己) 실현(實現)을 위한 능력(能力) 양성(養成)으로 새로운 민족문화(民族文化) 창조(創造)에 이바지하며,

궁극적(窮極的) 목적(目的)인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인 전통기예능(傳統技藝能)의 원형보존(原形保存) 및 전승(傳承)에 만전(萬全)을 기(期)할 것이다.

- 끝 -